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1032
-----------	------

2019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9월 6일, 김인제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인제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 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어렵고 어색한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또는 통용되는 한자어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 쓰이는 대표적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인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를 각각 “그 밖에” 또는 “그 밖의”와 “해당”, “부치다”로 순화함.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9월 6일 김인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032호로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일괄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이 정비하고자 하는 ‘일본식 한자어’란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뜻이 아닌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 영향으로 인해 일본과 같이 한자로 적으면서도 뜻으로 번역해야 하는 용어를 한자의 음 그대로 사용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부(公簿)’(공문서)나 ‘부분(副本)’(복사본)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표현하고 있는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고

자 하는 것은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29개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의하다”, “당해”, “기타”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회의에 부치다”, “해당”, “그 밖의” 등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 정비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22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조문인 ‘(기타)’를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

동 조례의 제11조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반드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22조의 ‘(기타)’는 ‘(시행세칙)’으로 수정하는 것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도 같은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047, 2019.11.18.).

1) 제11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22조의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함.

Ⅶ.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32
----------	------------

제안연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안 제22조의 개정사항을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II. 주요내용

- 안 제22조의 개정사항 중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함.(안 제 22조)

3. 참고사항 : 없음.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기타)”를 “(시행규칙)”으로 한다.</p>	<p>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기타)”를 “(시행세칙)”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시민 중심 언어의 자치법규 반영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및 제10조제4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안건의 부의)”를 “(안건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 부의”를 “협의회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의할”을 “부칠”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불가피”를 “불가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의하여야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을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제출받”으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8조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기타)”를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부의할”을 “안건으로 부칠”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부의할”을 “부칠”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부의”를 “안건으로 제출”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